

투자권유준칙

제1편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를 징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1]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설명의무

제13조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3.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3.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5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1]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①. 계약서류의 교부

-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6조-②.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6-② 및 16-③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1)-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 '금전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

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6조-③.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0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1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투자자문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항목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형(개인법인가분)

☐ 개인	☐ 법인
-----------------------------	-----------------------------

■ 투자자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

* 전문금융소비자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설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의 유형 조사 불원 시 본인의 투자자 유형 선택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	--------------------------------	--------------------------------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권유 희망 (정보제공필수)	
☐ 투자권유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 제공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거래 희망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자문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등록구분

☐ 기존정보와 동일

☐ 신규(또는 정보변경)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

■ 기초정보

대분류	소분류	항목
1. 고객의 연령 (신설)		☐ 19세 미만
		☐ 19세 이상 ~ 35세 미만
		☐ 35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80세 미만
		☐ 80세 이상 ~
2. 총 자산규모(순자산)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 연간 소득 현황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4.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유형별 비중 합계가 100%가 되도록 각 유형별로 비중 1개씩 선택)	4-1 보장성상품	☐ 0%~9%
		☐ 10%~19%
		☐ 20%~29%
		☐ 30%~49%
		☐ 50% 이상
	4-2 투자성상품	☐ 0%~9%
		☐ 10%~19%
		☐ 20%~29%
		☐ 30%~49%
		☐ 50% 이상
	4-3 대환성상품	☐ 0%~9%
		☐ 10%~19%
		☐ 20%~29%
		☐ 30%~49%
		☐ 50% 이상
	4-4 기타 (부동산 등)	☐ 0%~9%
		☐ 10%~19%
		☐ 20%~29%
		☐ 30%~49%
		☐ 50% 이상
5.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경험 기간	5-1 상품종류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E/DLB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부분지급형 E/DLS, 혼합형 펀드 등
		☐ 국내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 비보장형 E/DLS, 주식형 펀드 등
		☐ 선물옵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ELW 등
	5-2 투자경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투자경험 없음
		☐ 1년 미만 (경험없음)
6. 파생상품 등의 투자경험기간 (ex. 선물, 옵션, 파생형펀드, E/DLS 등)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
7. [금융지식 수준 및 이해도]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8.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 자산증식
		☐ 주택마련
		☐ 생활비
		☐ 교육비
		☐ 재무상환
		☐ 결혼자금
9.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더 중요
10.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미만
		☐ 5년 이상
11.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원금 손실을 원치 않으며 은행예금 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
		☐ 원금의 0% ~ -10%이하 손실을 감수하며 은행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
		☐ 원금의 -10%초과 ~ -50%이하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
		☐ 원금의 -50%초과 ~ -100%이하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
		☐ 원금 초과 손실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 추구

■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

정보제공 ☐	정보미제공 ☐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아래 항목 해당여부) YES ☐ NO ☐ - 고령투자자(65세 이상)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본인은 취약금융소비자로서 투자위험 등(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범위,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며,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서명/인)	

- * 상기정보주집은 투자성향에 따른 적합한 투자권유 및 금융상품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다른정보 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 * 취약한 금융소비자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아닌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됩니다.

■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고객명 대리인성명	(서명/인) (서명/인)

■ 투자성향 분류 참고표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자성향	적합한 투자성 상품 예시
안정형	안정형	6등급(국공채) 상품만 적합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5등급(저축은행예금, AA-채권) 이하 상품만 적합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4등급(A+채권, 90%보존 ELS) 이하 상품만 적합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2등급(국내주식, 지수형ELS) 이하 상품만 적합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전 상품 적합

■ 고객님의 투자성향판정

투자성향 평가점수 (1번 ~ 11 번)	투자자 성향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 기초정보

1. 투자가능기간	☐ 5년 이상 ☐ 3년~5년 ☐ 2년~3년 ☐ 1년~2년 ☐ 1년 미만
2. 금융상품 투자경험	☐ ELW, 선물옵션, 주식신용거래, 파생상품펀드 등 ☐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비보장ELS, 고위험회사채 ☐ 혼합형펀드, 원금부분보장ELS, 일반회사채 ☐ 채권형펀드, 원금지급형ELB, 금융채 등 ☐ 은행, 예/적금, 국채, MMF, CMA 등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 없음
3. 투자지식수준	☐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설명을 들으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구별할 수 있다.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전혀 모른다.
4. 보유자산(부동산 제외) 대비 투자자산비중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5. 현재와 미래 수입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고 향후 유지나 증가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향후 감소나 불안정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향후 감소 예상
6. 기대수익 및 손실감수수준	☐ 시장수익률 초과 수익 및 손실 기대 ☐ 시장(주가지수)에 비례한 수익 및 손실 기대 ☐ 이자율수준의 수익 및 손실 기대 ☐ 무조건 투자원금은 보존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투자경험 ※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 레버리지/인버스ETF 등	년도 월 (☐ 없음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8. 연소득현황(가족 포함)	☐ 1억원 이상 ☐ 7천만원~1억원 미만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9. 총자산(부동산 포함)중 금융자산 비중	☐ 10% 미만 ☐ 10%~25% 미만 ☐ 25%~50% 미만 ☐ 50%~75% 미만 ☐ 75% 이상
10. 투자위험감수능력	* 단기적(1~2개월)으로 감내할 수 있는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때 투자선택 ☐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 관망 ☐ 일부 환매 ☐ 전액 환매(또는 계약해지)

■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고객명 대리인성명	(서명/인) (서명/인)

■ 투자성향 분류 참고표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자성향	적합한 투자성 상품 예시
안정형	안정형	6등급(국공채) 상품만 적합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5등급(저축은행예금, AA-채권) 이하 상품만 적합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4등급(A+채권, 90%보존 ELS) 이하 상품만 적합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2등급(국내주식, 지수형ELS) 이하 상품만 적합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전 상품 적합

■ 고객님의 투자성향판정

투자성향 평가점수 (1번 ~ 10번)	투자자 성향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 점수화(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대분류	배점		
1. 고객의 연령 (신설)	4	5.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경험 기간	2
	6		4
	10		6
	8		8
	2		10
	-2		2
2. 총 자산규모(순자산)	2		4
	3		6
	4		2
	5		4
	6		6
3. 연간 소득 현황	2	6. 파생상품 등의 투자경험기간 (ex. 선물, 옵션, 파생형펀드, E/DLS 등)	2
	3		미포함
	4		
	5		
	6		
4.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유형별 비중 합계가 100%가 되도록 각 유형별로 비중 1개씩 선택)	미포함	7. [금융지식 수준 및 이해도]	2
	2		6
	4		8
	5		10
	6	8.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6
	7		5
	1		2
	1		3
	2		3
	2		4
	3	9.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28
	미포함		6
			12
		10.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28
			4
			6
			10
			12
		11.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28
			-10
			8
			10
			12

□ 점수계산방법

- 1 번부터 11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고객의 투자성향	점수구간		투자자성향
안정형	-73	20	안정형
안정추구형	21	40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41	60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61	80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81	100	공격투자형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점수화(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1. 투자가능기간 (5,4,3,2,1)
2. 금융상품투자경험 (6,5,4,3,2,1)
3. 투자지식수준 (4,3,2,1)
4. 보유자산(부동산제외)비 투자자산 비중 (5,4,3,2,1)
5. 현재와 미래 수입 (3,2,1)
6. 기대수익 및 손실감수수준 (6,4,2,-14)
7. 파생상품 투자경험 → 플랫폼에서는 삭제
8. 연소득현황 (5,4,3,2,1)
9. 총자산(부동산 포함) 중 금융자산 비중 (5,4,3,2,1)
10. 투자위험감수능력 (5,4,3,1)

□ 점수계산방법

- 1 번부터 10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고객의 투자성향	점수구간		투자자성향
안정형	-4	9	안정형
안정추구형	10	19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20	29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30	39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40	49	공격투자형

【별지 제3호】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3조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지정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회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2)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투자권유절차를 적용한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펀드,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3)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관리직원은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중단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위험분석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

(5)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고 임직원 대

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내규준수 여부

회사는 전담부서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투자권유를 자제한다.

제6조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 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매우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표1】적합성 판단기준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상품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고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	○	○	○	○	○
	적극투자형		○	○	○	○	○
	위험중립형				○	○	○
	안정추구형					○	○
	안정형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상품위험 구분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채권 ^{주1)}	국내		회사채 (BB+ 이하)	회사채 (BBB-)	회사채 (BBB0 ~ BBB+)	회사채 (A- ~ A+)	회사채 (AA- ~ A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해외	S&P, 피치	B+ 이하	BB- ~ BB+	BBB- ~ BBB+	A- ~ A+	AA- 이상	
		무디스	B1 이하	Ba3 ~ Ba1	Baa3 ~ Baa1	A3 ~ A1	Aa3 이상	
CP/단기사채			B 이하	A3-	A30 ~ A3+	A2- ~ A2+	A1	
조건부 ^{주2)} 자본증권	신종(Tier1)		그 외	정부결손보전은행				
	후순위(Tier2)		그 외	시스템적 중요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지주	정부결손보전은행			
ELS, DLS ^{주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형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신용연계 ^{주4)} DLS	국내		준거채무 BBB0 이하	준거채무 BBB+	준거채무 A- 이상			
	해외	S&P, 피치	준거채무 B+ 이하	준거채무 BB- ~ BB+	준거채무 BBB- 이상			
		무디스	준거채무 B1 이하	준거채무 Ba3 ~ Ba1	준거채무 Baa3 이상			
파생결합사채	ELB, DLB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ELW			ELW					
ETN ^{주5)}			일반 ETN	손실제한 ETN				
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신용거래, 투자주의· 경고·위험·관리종목	주식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국내/해외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ETF ^{주6)}	국내		운용사 표기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해외		1등급					
집합투자기구 ^{주7)}			운용사 표기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ETF는 국내 / 해외 상품별 ETF기준에 따름

당사 자문계약상품의 위험등급은 편입 자산 별 금액가중치를 보정한 값으로 산정

*위험등급 산정기준(소수첫째 반올림)